

#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체육진흥과)

제출일 : 2026. 8.

### 1. 제안이유

- 조례 전반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하고자 함.
- 신규 체육시설인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구성에 따라 사용료 부과 근거와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- 탁구장 사용료가 유사 실내 구기종목인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확보하고 선동축구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조정하고, 별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-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,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, 변경된 법령 제명과 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상 혼용되고 있는 ‘사용료’, ‘이용료’, ‘사용료 및 이용료’ 등의 용어를 ‘사용료’로 통일하고, ‘사용자’, ‘이용자’ 등도 ‘사용자’로 통일함
- 나. 신규 체육시설인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사용료 등 부과 대상 체육시설에 추가하고,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.
- 다. 탁구장 사용료를 배드민턴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, 선동축구장 사용료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, 보조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산정하고 별표에 명시함.
- 라. 공공체육시설의 계약 위반 수탁자에 대한 참여 제한, 무단 홍보물 설치 금지, 이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함.
- 마.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통일함.
- 바. 별표 제목에 시설명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
정비함.

사.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.

아. 용어 중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한 ‘불우청소년’을 ‘청소년’으로 변경하고, 5·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명을 현행 제명으로 정비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·운영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, 신규 및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, 탁구장 및 선동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,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, 위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수탁자 공모 참여 제한,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등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별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시설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,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